



정부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

< 개정 예산회계법령 >

- 예산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295호, '94.6.30)
-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288호, '94.6.25)
- 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995호, '94.7.20)
-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재무부령 제1996호, '94.7.20)

<회계예규>

- | | |
|--------------------------------------|---------------------------------|
| 1. 공사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04-104-15('94.7.20)】 |
|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04-103-12('94.7.20)】 |
| 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04-141- 7('94.7.20)】 |
| 4. 공사입찰유의서 | 【회계예규 2200.04-102-14('94.7.20)】 |
| 5.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회계예규 2200.04-101-11('94.7.20)】 |
| 6.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회계예규 2200.04-140- 7('94.7.20)】 |
| 7.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회계예규 2200.04-143- 6('94.7.20)】 |
| 8.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 【회계예규 2200.04-139- 6('94.7.20)】 |
| 9.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 【회계예규 2200.04-136- 6('94.7.20)】 |
| 10.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회계예규 2200.04-126- 8('94.7.20)】 |
| 11. 선금지급요령 | 【회계예규 2200.04-131-14('94.7.20)】 |
| 12. 보증금의 납부·반환 및 착오처리요령 | 【회계예규 2200.04-128- 3('94.7.20)】 |
| 13.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회계예규 2200.04-105- 9('94.7.20)】 |
| 1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회계예규 2200.04-147- 1('94.7.20)】 |
| 1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 | 【회계예규 2200.04-135- 3('94.7.20)】 |

I. 예산회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1. 예산회계법시행령

가.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시행령 제16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1.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 개정이유
 법 개정(제35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나. 세출예산의 이월대상 확대(시행령 제19조제1항)

종 전	개 정
○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용 불가 * 예외 - 명시이월비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추 가>	○ 현행과 같음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비중 입찰공고후 지

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 부대입찰 또는 PQ로 집행되는 공사
 ○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토록 공고된 공사

- 개정이유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명시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제외하고는 이월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입찰부터 계약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일선 기관에서 예산집행상 많은 애로를 겪어 왔음.
 이에 따라 이번에 부대입찰이나 PQ로 집행되는 공사, 대안,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되는 공사는 당해 회계년도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면 당해 회계년도 예산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산집행상 애로를 해소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임.

다. 공사의 분할발주금지제도 개선(시행령 제70조)

종 전	개 정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공사시기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음. -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한 다음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가능 ○ 항만시설·어항시설·교통안전시설·지하철·도로·하천·농지개량·택지조성·공업단지조성공사 및 관로공사 (회계예규: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현행과 같음) - 다만, 발주관서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발주가 가능 1.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공사집행요령 §3)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 연결된 일체식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
단일공사:예산서에 단일비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

- 개정이유

계약업무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사의 분할발주여부는 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신중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계약업무 수행을 도모

라. 지역공동계약제도 도입(시행령 제74조, 부칙 제1조)

종 전	개 정
<신 설>	<p>- 각 발주관서의 장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직할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게 하여야 함. 다만, 당해 지역내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 지역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p> <p>○ 동제도는 UR 정부조달협정이 '97.1.1부터 발효되므로 '96.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함.</p>

- 개정이유

동제도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와 기술이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중소건설업체

의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행정쇄신위원회 건의('93.12.10)사항임.

마. 중소기업생산제품의 구매제도 개선(시행령 제90조 및 제93조)

종 전	개 정
<신 설>	-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발주할 수 있음.

- 개정이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단체적수의 계약 방법 이외에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
그동안 단체적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달청, 국방부등으로부터 동제도 개선건의가 있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는 반대의견이 있었는 바, 금번 개선안은 상공부와 협의하여 조정한 것임.

바.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등 재무상태 취약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시행령 제90조제1항)

종 전	개 정
<신 설>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재무상태: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실적, 도급한도액, 기술보유상황, 납품능력, 회사소제지, 공사규모 등 6종이 있음.
이는 주로 과거의 경험, 시공능력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임.
그러나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정부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

법인, 즉 부도상태에 있는 경우등에는 비록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적절한 계약이행을 기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추 가>	예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계사규제46조제3항제2호)
------------------------------	---

사. 선금 및 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종 전	개 정
선금은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14일-----
준공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 가능함.	-----14일-----
기성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7일-----

- 개정이유
선금, 준공대가 및 기성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계약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이유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2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당초 정한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2인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자. 계약이행의 검사(시행령 제114조)

종 전	개 정
<신 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은 공무원을 대신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감독을 행하는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함.

아. 견적서 제출 완화(시행령 제108조)

종 전	개 정
수의계약에 의할 때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 (현행과 같음) - 다만,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 개정이유

책임감리의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함.

차.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확대(시행령 제121조제4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징수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개정이유

국가기관이 아파트등을 구매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상관습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감안하여 개선하였음.

○ 매회계년도초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회계연도중 집행할 공사중 100억원이상이 되는 공사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부장관은 이를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건설부장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공고

- 개선이유

건설부장관이 해당공사를 취합하여 심의후 공고토록 함으로서 공고절차를 간소화 함.

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제9조)

종 전	개 정
-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4명을 선정,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설계점수: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산정

- 제도 개선이유

○ 종전에는 설계점수가 가장 낮은 경우(조잡설계)에도 덩핑입찰일 때에는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제도취지에 부합되지 못함.

○ 우수설계자가 낙찰될 수 있게 함으로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2.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 시행령특례규정

가.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상공사 공고방법 개선(제3조)

종 전	개 정
-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할 공사는 매회계년도 초에 재무부장관이 공고	- 매회계년도 초에 건설부장관이 공고

* 설계·시공일괄입찰: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과 함께 입찰하는 제도

* 대안입찰:발주관서가 작성한 설계보다 기능·효과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대안설계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한 입찰

- 개정공고 절차

다. 낙찰자 선정절차 간소화(제9조제2항)

종 전	개 정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낙찰자로 결정함.

- 개정이유

낙찰자 선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심의를 생략함.

3. 계약사무처리규칙

가. 원가계산에 있어서 단위당가격의 기준범위 확대(제9조)

종 전	개 정
- 원가계산에 있어 단위당가격은 ○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당가격.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한 단위당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신 설>	- 원가계산에 있어 단위당가격은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재무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함.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시기·계약목적물의 특성·공사현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가격의 100분의 15범위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개정이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당가격(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정부노임단가가 없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통계법 제3조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제조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다만, 재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함.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시기, 특성, 현장등을 고려하여 동가격의 15%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이제까지는 정부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기준단가로서 정부노임단가를 매년 고시하여 왔으나, 고시단가가 실제 시중노임단가와 격차가 커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대상이 되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제도 개선(제9조제2항)

종 전	개 정
- 재무부장관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지정함.	- 원가계산용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개정이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규정 신설(제67조제2항)

종 전	개 정
<신 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

- 개정이유

여러가지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자보증금을 납부토록 한 경우 그중 하자담보책임이 가장 긴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 건설공사 수급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토록 한 것임.

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제71조제2항제3호)

종 전	개 정
- 계약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조경공사 제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조경공사 제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제72조제1항)

종 전	개 정
<p>-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공정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p> <p>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5년</p> <p>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의 공사: 4년</p> <p>3. 관개수로·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 및 공동주택 등의 공사: 3년</p> <p>4. 도로·일반건축·부지정지·조경시설물설치·조경식재 등의 공사: 2년</p> <p>5. 기타 공사: 1년</p>	<p>-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별표1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별표1]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2조 관련)

공 종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교 량	
가. 경간장 50m이상 또는 연장 500m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연장 500m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다. 교량중 “가”및“나”이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필골구조부	10년
나. “가”이외의 시설	5년

공 종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철 도	
가.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이외의 시설	5년
4. 공항 및 삭도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이외의 시설	5년
5. 항만·방파제·사방 및 간척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이외의 시설	5년
6. 도 로(암거·측구 및 포장 포함)	2년
7. 댐	
가.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나. “가”이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7년
나. 관로 매설 및 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 및 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이외의 시설	3년
13. 기타토목 공사	1년
14. 건 축	
가.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나.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이외의 주요구조부 및 “가”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다. 건축물중 “가”및“나”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정부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

공 종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15.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 및 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 및 조적	2년
사. 창호제작 및 설치	1년
아. 지붕 및 판금	3년
자. 철물(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제외)	2년
차. 철근콘크리트(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3년
카.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 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 스 및 배연설비	2년
타.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3년
파. "카" 및 "타" 이외의 건물내 설비	1년

4. 회 계 예 규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심사기준 보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40 ○ 기술능력:40 ○ 경영상태:20 ○ 신 인 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30 ○ 기술능력:40 ○ 경영상태:30 ○ 신 인 도:±10

- 『신인도』 부분의 세부항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 등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 등 11개 항목 * ISO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 6개 항목 추가

- 『실적』 인정기준 보완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실적만 인정 (유권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실적 이외에 전체공사에 대한 50% 이상의 기성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 · 다만 발주관서가 기성검사하여 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한 경우에 한함.

나. 공사입찰의 무효사유 추가(『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인 “재무상태”의 세부기준(『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라 함은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라. 공사의수의계약 집행기준 보완(『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전차공사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 이상을 차지한 경우를 말함 등 현재는 세부기준을 획일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인 세부집행사항을 삭제 · 25% 등 삭제 * 발주관서의 장이 공사특성에 따라 결정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방법

현 행	개 정
<p>○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시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함.</p>	<p>○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시에는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였으나 당해 계속공사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p>

복수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선정 절차에 관한 회계통칙

[회제 45101-662, '94.5.23]

1. 회제 45101-202('94.2.25)에 관련됩니다.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과 낙찰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 부(원) 및 귀부 산하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

-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금액』이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약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감정가격 및 견적가격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작성된 가격을 의미함.
- 2)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 후단의 규

정은 상기 “가”항에 따라 작성된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이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일정율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조정할 수 없도록 한 취지한 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조사·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조정한 후 작성하여야 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93.10.20)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나. 낙찰자 선정절차

-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함)에 $\pm 1\%$ 상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입찰전에 미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복수가격간의 폭을 가능한 한 확대하여 작성하여야 함.
-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중에서 2인(우편입찰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정가격중에서 2개를 추첨토록 한 후 동가격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낙찰자가 확정된 후 입찰참가자 앞에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된 가격과 그 이외의 가격을 공개하여야 함.
- 3)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복수예정가격 2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사하여야 함.

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칙(회제 45101-202, '94.2.25)은 폐지함.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 세부적용요령 시달

[회제 45110-144, '94.2.8]

1. 회제 45110-91호('94.1.25)로 송부한 "'94년도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임단가기준"상의 『I. 노임단가기준적용요령, 1. 적용기준 "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기준 세부적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부(원) 및 귀부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93.12.31이전에 계약체결되어 94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공사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노무비 증감액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동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 1) 공사(광·전자·통신, 문화재, 원자력 부문포함, 이하같음)
 - 가) 9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4년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단가에 등락율 7.5%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

나) '92년도에 계약체결, 93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94년도에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93년도에 조정된 계약단가에 등락율 7.5%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

다) 92년도에 계약체결, 93년도에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도에 조정할 경우;

- ① 계약체결당시의 단가:92년도 정부고시 노임단가
- ② 물가변동당시의 단가:93년도 정부고시 노임단가에 7.5%를 곱하여 가산한 금액
- ③ 위 단가를 적용, 등락율을 산정하여 이를 당초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

2. 물품의 제조·구매·기타 계약인 경우에는 94년도 정부고시 노임단가기준상의 당해직종의 단가를 기준함.

나. 동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공사

가) 9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4년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93년도 공사부문 정부고시 노임단가 대비 7.5% 상승된 지수를 기준

나) 92년도에 계약체결, 93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94년도에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93년도에 조정된 계약단가 대비 7.5% 상승된 지수를 기준

다) 92년도에 계약체결, 93년도에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도에 조정할 경우;

92년도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계약체결시점(기준시점)의 지수로, 93년도 정부고시 노임단가 대비 7.5% 상승된 지수를 물가변동시점(비교시점)의 지수로 하여 산정

2) 물품의 제조·구매·기타계약인 경우에는 93년도 제조부문 정부고시노임단가 대비 5.0% 상승된 지수를 기준으로 함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칙

[회제 45101-1116, '93.10.16]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절차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관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발주자측에 유리하게 임의해석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등 예산회계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계약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공정한 회계업무를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사항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요령 제2조 제5항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경우에 만 적용하기 바람
 -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제3항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칙

[회제 45101-1117, '93.10.16]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3.7.1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댐공사등 14종의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제도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1호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 단위교량 100미터이상으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교량과 교량 이외의 공사(예:도로)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이 100미터이상이고, 교량부분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7호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다음공사를 말함.
 - 터널공사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터널공사와 터널 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터널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터널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

현행	개정
<p>【회계예규 2200.04-135-2('93.7.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p>	<p>【회계예규 2200.04-135-3('94.7.2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p>
<p>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라 함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u>시공 또는 제조</u>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p> <p>2. (생략)</p> <p>3. 각 관서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당해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하도급의 승인요청이 있을 때 또는 계약자가 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이의 승인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1) <u>공사명</u></p> <p>2)~5) (생략)</p> <p>6) <u>시공 또는 제조기간</u></p> <p>7)~9) (생략)</p> <p>4. (생략)</p> <p>5. 하수급인의 선정기준</p> <p>1) 하수급인은 당해 <u>공사 또는 제조</u>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p> <p>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등을 보유한 자만이 <u>시공 또는 제조</u>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p> <p>6. (생략)</p>	<p>1.<u>시공, 제조 또는 용역</u>.....</p> <p>2. (현행과 같음)</p> <p>3.<u>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u>.....</p> <p>1) <u>계약건명</u></p> <p>2)~5) (현행과 같음)</p> <p>6) <u>계약이행기간</u></p> <p>7)~9)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1)<u>공사, 제조 또는 용역</u>..... 2)<u>시공, 제조 또는 용역</u>.....</p> <p>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5-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을 회계예규 2200.04-135-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4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p>